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9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이수진 · 임미애 · 남인순
김현정 · 박선원 · 박희승
김정호 · 전종덕 · 김문수
백혜련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적 신분”을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로 한다.

3.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건강권 등) ① (생략)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u>사회적 신분</u>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0조(건강권 등) ① (생략) ② ----- ----- <u>사회적 신분, 거주지역</u> ----- ----- -----.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생략)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u>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u>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 ⑫ (생략)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 ----- <u>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u> ----- ----- -----. ④ ~ ⑫ (현행과 같음)